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개선〉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1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제220841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공동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개선(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3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1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맹성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동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개선(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말소등록) ① ----- ----- ----- -----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나머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동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1호에 따라 폐차를

현행	개정안
② ~ ⑪ (생략) <신설> <신설>	<u>요청하는 경우. 다만,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u>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시·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u>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u>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폐차 요청으로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13조¹⁾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²⁾를 요청한 경우 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効)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가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 3)에 따라 공동소유(공동상속을 포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4)에 따르면 상속인의 말소등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일부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과태료⁵⁾가 부과되고 각종 관리비용(보험료,

3)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세)을 자동차를 관리하는 상속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가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⁶⁾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8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4조 제5항제2호의2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20		

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 등록하도록 의견표명 -」, 2021. 10. 8.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참고로, 공동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입법례로, 「주택법」 제23조⁷⁾에서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보고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 제1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요건으로 ①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말소등록 사실의 공시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말소등록이 가능함.

7) 「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첫 번째 요건만 충족할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고, 두 번째 요건만 충족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과 관계없이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3조제12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13조제1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 지분의 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민법」 제265조⁸⁾에 따르면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의 임대, 보수 등의 관리행위⁹⁾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변동은 수반하여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말소등록의 경우 이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 「주택법」 등 유사 입법례 등에서 토지 등의 공유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¹⁰⁾ 등을 참고할 수 있음.

8)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9)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함(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한편,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제1항제9호의 ‘나머지 자동차 소유자’를 “공동소유자”로 약칭하고 있어 폐차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서는 말소등록의 요건 중 하나로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여 신청하는 소유자를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하나의 약칭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고의나 과실 없는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소유권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소유자(상속인 포함)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등록관청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있음.

10)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말소등록 관련 통계**☐ **최근 3년간 말소등록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말소등록 건수	1,203,822	1,105,150	1,318,204

☐ **최근 3년간 공동소유자 누적 등록 및 지분별 등록대수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공동소유 자동차 누적 대수	2,309,039	2,432,332 (증123,293)	2,543,871 (증11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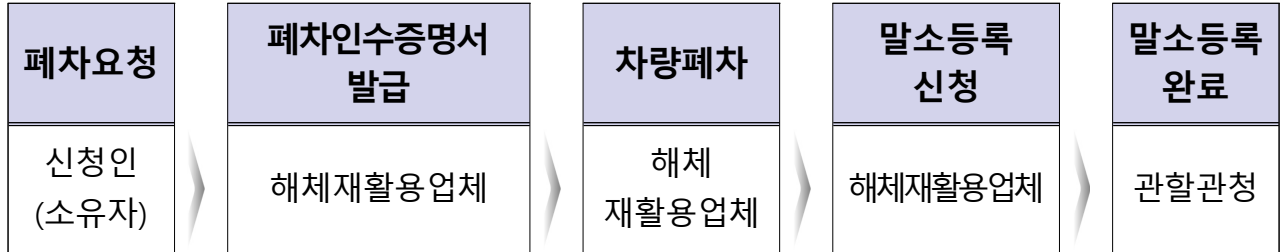
☐ **공동소유자 지분별 등록대수 현황(2023년 기준)**

공동소유 지분비율(%)	등록대수	공동소유 전체 등록대수 대비 비율(%)	비고
99 : 1	1,718,362	67.55	공동소유 전체 등록대수 : 2,543,871
98 : 2	5,006	0.19	
97 : 3	1,138	0.04	
96 : 4	97	0.004	

참고2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절차

□ 해체재활용업체에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일반적 절차)



□ 공동소유자 상속인 미동의시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개정안)

